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AI 방역실태 상시점검계획

우리부는 발생농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AI 상시예방 체제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AI 방역실태 상시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은 불임을 참고하여 차질없이 업무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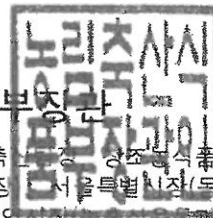
- 아 래 -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5. 6. 1 ~ '15.6.30(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일)
 - * AI 발생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발생농장(339호), 도축장(55개소), 전통시장(299개소)
 - 지역별 점검대상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 점검반 편성·운영
 - 지자체(시·도, 시·군·구) 합동점검반 : 월 1회(1~2주차)
 - 중앙합동점검반(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 월 1회(4주차)

붙임 AI 방역실태 상시점검 계획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



수신자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방역총괄과장, 친환경축산과장, 농산물품질관리과장, 농산물안전관리과장, 농산물유통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SI에방통제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질병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업유통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산림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축산과장), 충청북도지사(축산과장),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 전라남도지사(축산과장), 경상북도지사(축산경영과장), 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축산정책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농협중앙회장(축산경제대표),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육계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장

주무관 이희철 사무관 김정주 방역관리과장 전결 2015. 5. 21. 박정훈

협조자 주무관 정흥일

시행 방역관리과-3524 (2015. 5. 21.)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세종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378 팩스번호 044-868-0469 / heechullee@korea.kr / 대국민 공개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AI 방역실태 상시점검 계획

2015. 5. 2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I 개요

□ 목 적

- 발생농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지자체 : 현장점검, 중앙점검반 : 지자체 점검결과 현장확인)으로 AI 상시예방 체제 구축
 - AI 발생농장 등의 추가 발생 방지 및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련 개별법령*의 준수여부 점검
 - *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그간 추진사항

- 발생농장(43호) 사후관리 실태 점검('15.2.13~2.28)
- 발생농장(56호) 사후관리 및 가축 매몰지(586개소) 실태 점검(4.1~4.21)

II 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5. 6. 1 ~ '15.6.30(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일)
 - * AI 발생상황에 따라 일정조정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발생농장(339호), 도축장(55개소), 전통시장(299개소)
 - 지역별 점검대상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 점검반 편성·운영
 - 지자체(시·도, 시·군·구) 합동점검반 : 월 1회(1~2주차)
 - 중앙합동점검반(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 월 1회(4주차)

< 점검대상 농장 및 도축장 >

(개소)

구분	합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장	339	1	1	-	-	-	1	4	1	47	77	32	70	98	3	4	-
도축장	55	-	1	1	1	-	-	-	3	9	8	6	10	9	1	4	2

〈 점검대상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

(개소)

구 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통시장	3	4	-	5	1	2	48	43	12	29	35	77	24	14	2	299
가금판매소	11	9	-	57	1	4	44	-	13	3	76	59	29	10	3	319

※ 가금판매업소 : 현지 점검시 변동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점검대상 : 고려사항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후 대상 선정

- (농장) ① AI 발생 여부, ② 계열사 평가결과, ③ 고발 및 처벌, ④ 방역관리지구, ⑤ 사육축종, ⑥ 농장유형(가든형식당 등)
- (도축장) ① 계열사 평가결과, ② 고발 및 처벌, ③ 도축 축종, ④ 위생일체점검 결과
- (전통시장) ① AI 발생 여부, ② 고발 및 처벌, ③ 판매 축종

○ 점검반 및 일정 편성

① 지자체 합동점검반(시·도, 시·군·구) : 월 1회(1~2주차) 점검

i) 일부 시·군·구의 발생 편중으로 타 지역의 지원이 필요한 바, 시·도에서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점검표(붙임2)을 토대로 점검계획을 수립하되 여건에 따라 점검사항 추가

ii) 합동점검반 편성 시 점검대상과 관련된 개별법 소관 지자체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반 편성 : (예) 점검반 당 2~3명

iii) 점검반은 대상 설정 후 점검 시 필요한 정보 파악, 점검표에 따른 점검방법 등 사전 숙지 요망

② 중앙합동점검반(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 월 1회(4주차) 점검

i) (농식품부) 축산시설 관련법령 주관부서와 점검반원 구성 후 점검

- ii) (검역본부) 점검지역(시·군·구)의 인력 편중으로 타 지역본부의 지원이 필요한 바, 본부 차원에서 점검계획 수립 후 주도적으로 중앙합동점검반 점검 : (예) 점검반 당 2~3명
- iii) (지자체) 점검대상과 관련된 관련법령 소관 부서와 점검반 구성 후 점검
 - ※ 점검반은 대상 설정 후 점검 시 필요한 정보 파악, 점검표에 따른 점검방법 등 사전 숙지 요망

- 점검내용 : 지자체는 현장점검 실시, 중앙점검반은 지자체 점검결과 현장확인
 - (지자체 합동점검반) 농장·도축장·전통시장 등 축산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점검
 - (중앙합동점검반) 관련법 등 관련 지자체 점검결과 현장 확인

□ 행정사항

- 중앙합동점검반원 구성 및 제출
 - (지자체) 농식품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중앙합동 점검반 반원 구성 후 검역본부에 통보(15.5.27, 붙임1 참조)
 - (검역본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을 토대로 중앙합동점검반 최종 점검자 명단 작성 후 통보(5.29)
- 점검결과 취합 제출
 - (지자체 합동점검반) 시·도에서는 점검 실적을 농식품부(방역관리과), 검역본부(AI예방통제센터)에 제출(3주차 월요일)
 - * 점검반원은 필히 근거 자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점검결과 제출
 - (중앙합동점검반) 검역본부에서 점검실적(4주)을 점검 후, 5일 이내 농식품부(방역관리과), 지자체(시·도)에 통보

III 향후 계획

□ 현장점검 시 미비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환류

- 관련법 미비사항에 대한 제제(행정처분 등) 및 양성화 등 조치
- 발생농장 등의 미비사항에 대한 방역정책 수립 활용

- ※ 붙임 1. 점검자 명단(제출서식) 1부.
2. 점검표 1부.

[붙임1]

점검자 명단(제출서식)

시도	시군구	점검대상(개소)			점검자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구분	농식품부	검역본부	시도	시군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성명				
						연락처				

[붙임2]

농장 점검표

점검 대상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축종	수수	점검자

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결과	비고
1	소독설비설치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		
2	소독실시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항		
3	소독실시기록부 비치·기록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6항		
4	출입기록부 비치·기록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5	가축거래기록부 비치·기록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1항		
6	남은음식물 급여 여부		
7	급여시, 남은 음식물 적정처리(열처리) 여부		
8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고 여부		
9	취, 조류 등 야생동물 출입 방지 및 방제실시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항		
10	축산차량 등록 여부(축산차량이 있을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2항		
11	차량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2항		
12	축산내부 전용장화 착용 여부		
13	발판소독조 사용 여부		
14	해당 가금농가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정 여부		
15	가금류 이동시 “가금류 이동승인서” 신청·발급 여부		

	점검내용	확인 결과	비 고
16	농장 내 생석회 도포 여부		
17	가금농가 왕겨 도로 후 포대 재사용 여부		
18	외국인 노동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 (고용신고, 방역수칙 교육 등)		
19	분뇨는 농장안에서 보관(반출제한) 준수 여부		
20	축산업(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가축사육업) 허가 여부 축산법 제22조 제1항		
21	3개월 이상 휴업·폐업·재개업시 신고 여부 축산법 제22조 제4항		
22	영업자 지위 승계시 신고 여부 축산법 제24조 제2항		
23	허가기준 중 시설·장비 구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위치기준(신규만 해당) 준수 여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1		
24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여부 가축분뇨법 제11조		
25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여부(신·증설) 가축분뇨법 제12조		
26	허가·신고한 내용에 따라 톱밥, 왕겨 등이 수분조절제 사용 여부		
27	퇴비사 유출방지턱 미설치,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공공수역 오염 가축분뇨법 제10조		
28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인근 농수로 및 하천 등에 유출행위 가축분뇨법 제10조		
29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액비 무단살포, 축사분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 가축분뇨법 제10조		
30	초지, 농경지등 확보 여부(저장액비화 방법에 한함) 가축분뇨법 제12조의2		
31	액비살포시 액비살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26조		
32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점검내용	확인 결과	비 고
33	가축분뇨 저장조 및 축분분리시설 설치여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34	처리시설의 고장방치, 임의철거 여부 등		
35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가축분뇨법 제13조		
36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일지 등 장부 기록·보존 가축분뇨법 제39조		

그 외 점검사항 및 지자체 의견

○

농가 의견(건의·애로사항 등)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에 필히 지자체 점검자 서명.

□ 농장 점검결과(예시)

* 점검사항 증빙사진 첨부

점검내용	증빙사진
· 축사내 분변 존재시, 생석회 및 비닐도포 상태	· 축사 내 잔존 오염물(깃털, 분변 등) 세척·소독상태
· 축사 내 사용장비 세척·소독상태	· 사료창고, 퇴비사, 왕겨창고 등 세척·소독상태
· 농장 외부, 주변지역 소독상태	· 살처분 및 매몰지역 소독상태

도축장 점검표

점검 대상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 축종	일일 도축수수	점검자

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결과	비 고
1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의 닭·오리 생체검사 등에서 AI 증상 확인 및 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11조, 제 13조, 제 18조		
2	도축장 영업자의 도축장 출입 차량에 대한 정문에서의 소독 실시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		
3	가금류 운반차량 운전자의 어리장 소독 실시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		
4	가금 운반차량 가금이동승인서 지참여부 및 차량, 운전자 등 승인서상의 내용과 일치 여부		
5	가금운반차량 소독필증(경계지역) 또는 소독기록부(방역대 외부) 지참 및 소독실시여부		
6	계류장의 소독실시 여부 및 오리·닭 분리 사용 여부		
7	AI 관련 가금류 반입금지지역으로 반입 여부 * 확인 시 즉시 방역기관보고·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13조, 제 18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8	출입차량의 GPS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의 3		
9	도축장 영업자의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1년간 보존)		
10	출입 차량의 운전자의 내·외부 및 탑승자 소독 실시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		
11	도축장 영업장의 출입자·차량의 출입기록 작성·보존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의 2		
12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제가 AI 방역용으로 검역본부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		

□ 그 외 점검사항 및 지자체 의견

○

□ 도축장 의견(건의·애로사항 등)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에 필히 지자체 점검자 서명.

□ 도축장 점검결과(예시)

* 점검사항 증빙사진 첨부

점 검 내 용	증빙 사진
· 축사내 분변 존재시, 생석회 및 비닐도포 상태	· 축사 내 잔존 오염물(깃털, 분변 등) 세척·소독상태
· 축사 내 사용장비 세척·소독상태	· 사료창고, 퇴비사, 왕겨창고 등 세척·소독상태
· 농장 외부, 주변지역 소독상태	· 살처분 및 매몰지역 소독상태

전통시장 점검표

점검 대상

성명	주소(시장명)	전화번호	축종	수수	점검자

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결과	비고
1	거래 형태		
2	가금 운반 차량 소독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		
3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설치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		
4	업소(케이지 등) 소독 여부		
5	가축상인, 출입자 소독 여부		
6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작성여부		
7	소독제 적정성 여부(등록제품, 제품명, 유효기간 등)		
8	가금거래기록부 비치, 작성 여부		
9	공급받은 가금 거래 정보 적정 관리 여부 * 공급날짜, 축종, 마리수, 가금이동승인서		
10	가금 공급자(중개상) 정보 적정 관리 여부 * 중개상 성명, 주소, 핸드폰, 운반차량 번호, GPS 등록		
11	업소(케이지 등) 내 가축 잔반 급여 여부		
12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비치 여부		
13	소유하는 계류장에 대한 축산농가(축산업) 허가 여부 축산법 제22조		
14	가금 판매에 따른 가축거래상 등록 여부 축산법 제34조의2		

□ 그 외 점검사항 및 지자체 의견

○

□ 전통시장 의견(건의·애로사항 등)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에 필히 지자체 점검자 서명.

□ 전통시장 점검결과(예시)

* 점검사항 증빙사진 첨부

점 검 내 용	증빙 사진
· 측사내 분변 존재시, 생석회 및 비닐도포 상태	· 측사 내 잔존 오염물(기름, 분변 등) 세척·소독상태
· 측사 내 사용장비 세척·소독상태	· 사료창고, 퇴비사, 왕겨창고 등 세척·소독상태
· 농장 외부, 주변지역 소독상태	· 살처분 및 매몰지역 소독상태